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12.6.~2023.1.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국적”란을 삭제한다.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소속회사 대표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법 제31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 ----- ----- -----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36조 제6항 제1호에 한정하 다)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발급 ()부			
	열람 ()부			
용도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	---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원부 확인 → 등록원부 발급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4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면허번호:

(앞쪽)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자료 구분					
주소					
국적					
면허 종류	발급 일자	발급자 성명	면허 종류	발급 일자	발급자 성명
불도저			롤러		
5톤 미만 불도저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굴착기			쇄석기		
3톤 미만 굴착기			공기압축기		
로더			천공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천공기		
5톤 미만 로더			준설선		
지게차			타워크레인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기종기					

210mm×297mm[백상지(150g/㎡)]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인적사항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사명		
	측량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퇴사일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기술구분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위와 같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인

작성방법

- 기술경력의 작성요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하며, 기술구분과 전문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비고 라목에서 정하는 분야를 적습니다.
- 측량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60g/㎡)